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71
----------	-------

제출년월일 : 2024. 5.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여성가족부는 생활체감형 정책(법령 및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 개선)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지자체 등에 개선 권고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서 성차별적 용어인 “미망인”을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로 용어 변경(안 제13조제2항)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4. 4. 18. ~ 5. 8.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5)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24.5.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미망인이**”를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u>미망인이</u>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p>	<p>제13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u>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u>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 재정관리국 재산세과 김주희 (☎ 02-3153-8715)